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9
----------	--------

제출연월일	2005. 3. 3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으로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을 30% 인상함

나. 상위법령에 맞게 법률 제명 정비

- 도시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재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토지구획정비사업법 ⇒ 도시개발법

다.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법제처 권고안 대로 정비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수도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1. 18 ~ 2005. 2. 12)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천시수도급수조례”를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나목의(1)중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비사업법, 도시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의제2호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을 “ 「수질환경보전법」 ”으로 하고,
같은표 같은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을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
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수질환경보전법” 을 “ 「수질환경보전법」 ”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 “하수도법” 을 “ 「하수도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이 조례 공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업종	구간(m ³)	요율(원)	비고
가정용	1~20	175	
	21~30	201	
	31이상	260	
일반용	1~50	187	
	51~100	260	
	101~300	299	
	301~500	357	
	501이상	409	
대중탕용	1~500	169	
	501~1000	221	
	1001~1500	273	
	1501이상	338	
산업용	m ³ 당	169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1) 도시의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비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 (5) (생략) 3. ~ 4 (생략) ③ ~ ④ (생략)</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도시의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등) (2) ~ (5)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별표1]

하수도요금율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별표1]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업 종	구간(m³)	요율(원)	비 고	업 종	구간(m³)	요율(원)	비 고
가정용	1~20	135		가정용	1~20	175	
	21~30	155			21~30	201	
	31이상	200			31이상	260	
일반용	1~50	145		일반용	1~50	187	
	51~100	200			51~100	260	
	101~300	230			101~300	299	
	301~500	275			301~500	357	
	501이상	315			501이상	409	
대중탕용	1~500	130		대중탕용	1~500	169	
	501~1000	170			501~1000	221	
	1001~1500	210			1001~1500	273	
	1501이상	260			1501이상	338	
산업용	m³당	130		산업용	m³당	169	

관 련 법 령 발 취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삭제 [93.12.10]

[전문개정 73.2.8]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수 있다. [개정 2001.3.28.] [신설 94.8.3, 99.2.8 법5864] [[시행일 2001.9.29]]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10, 94.8.3]

하수도법 시행령

-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3.3.25]